

2023년 제4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3-141호(2023.9.6.)에 따른 「2023년 제4회 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 상 청 장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A 영항예보기술개발	기상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A-02

2. 합격자 등록 안내

-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 나. 등록기간 : 2023. 11. 20.(월) ~11. 30.(목)
-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팀)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본인기준-상세본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 ① 신원진술서 2부 <서식 1>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서식 2>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서식 3>
- ④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 각 1부
- ⑦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4>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전문의 소견서(서식4-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42-481-7249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 ①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 및 제출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③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직장명 및 소재지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합니다.

국적관계 : 해당 국적란에 체크 표시합니다.

학력

- 학교명 :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 학위 :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 :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동·면단위까지 적습니다.)

경력

본인의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상별

본인의 공무원으로서 재직 시 상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상별로 기재합니다.

병역관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군별, 병과, 최종계급, 군번,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 미필사유 :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연령미달, 입영연기중,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

정당, 사회단체 활동경력

-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 미혼인 경우 :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동산의 가액 등을 기재
- 기혼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동산의 가액 등을 기재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부모·배우자·본인의 자녀·형제·자매를 기재합니다.

- 기재 순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모두 기재

배우자 부모

복한 및 해외거주 가족

-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복한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은 반드시 기재합니다.(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해외 거주 가족으로 기재)
- 해외유학, 사업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식 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기상청)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운전직, 7급 전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4-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p>※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기상청),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운전직, 7급 전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